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61
----------	------

2020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찬성자 42명)
- 나. 발의일자 : 2020년 7월 13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14일
- 라.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서윤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람료 반환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관람의 제한규정을 변경함(안 제7조제2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 및 이용제한에 따른 문화권 제약을 야기할 수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람료)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4조(관람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u>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 ----- <u>사람은</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u>	2. <u>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u>
3. <u>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u>	<u><삭 제></u>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1)에 따라 인권주류화,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협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²⁾를 도입·운영하고 있음³⁾.

- 인권담당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치법규 860개(조례631, 규칙229)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① 차별 및 인권침해, ②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③ 시민참여 보장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자치법규 62개(조례 57, 규칙5) 96개 조항에서 개정사항을 도출하였음.

□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I. 차별 및 인권침해	II.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III. 시민참여보장
개선점	인권친화적 행정기반 구축	문화권,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참여(참정)권, 평등권
인권침해(제한)분야	1.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조항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상위법에 근거한 시설 이용 감면(면제)의 올바른 적용여부) 5. 반환권 제약(공공시설 이용 사용 시 반환조항이 미비한 경우) 6. 구제권 제약(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여부 및 구제절차 포함여부)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 현행 조례 제8조와 제9조는 관람료와 무료관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시립박물관 관람료 반환 건수’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한 바, 대부분의 전시가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

2) 인권영향평가(HRIA)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법령, 계획, 정책,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

3)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정무부시장 방침 제3호, '19.4.)

람료를 반환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

다만, 인권담당관에서는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중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분야에 포함된 '5. 반환권 제약에 따라 '관람료 반환'을 권고하였고, 자치법규의 공공시설의 이용 중 취소에 따른 반환과 관련하여 공통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안 제4조제3항 신설은 타당하나 실제로는 무료로 운영되므로 현실적인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과 인권위원회에서는 박물관의 건전한 관람문화를 저해하고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관람제한 대상자를 '술 또는 약물, 방해할 물품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시민의 관람권을 보장하고자 하므로 안 제7조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서울시 각 실국에서는 시민참여 기반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개선하고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市 주요 정책 추진시 인권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61
----------	------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3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동식, 박기재, 정진철,
김기대, 김제리, 봉양순, 임만균,
정재웅, 임종국, 양민규, 이정인,
유정희, 박기열, 오현정, 전병주,
이상훈, 김화숙, 황인구, 장상기,
오중석, 최 선, 채인묵, 장인홍,
이태성, 추승우, 이동현, 전석기,
노식래, 노승재, 김경영, 김희걸,
권순선, 문병훈, 김수규, 김광수,
유 용, 송도호, 최영주, 문장길,
최정순, 홍성룡, 김경우 의원(4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람료 반환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나. 관람의 제한규정을 변경함(안 제7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관람료)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p> <p>1. (생 략) 2. <u>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 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 는 사람</u> 3. <u>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u> 4. · 5. (생 략)</p>	<p>제4조(관람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 를 반환한다.</u></p> <p>제7조(관람의 제한) ----- ----- <u>사람</u>은 -----.</p> <p>1. (현행과 같음) 2. <u>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사람</u> <u><삭 제></u></p> <p>4. · 5. (현행과 같음)</p>